

생산등록번호	농 수 산 유 통 과 -19214
등 록 일	2026. 7. 30.
결 재 일	2026. 7. 30.
공개 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친환경농업팀장	농수산유통과장
홍가향	고기담	전결 2026. 7. 30. 고유화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 총 사업비 : 12,130천원(도비^{30%} 3,639 시비^{70%} 8,491)
- 사업내용 : 들녘, 논밭 등에 방치되어있는 폐농기계와 농업인이 소유한 폐농기계를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처리하는 비용(운송비, 인건비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정 읍 시
(농수산유통과)

2026년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1 추진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2,130천원 (도비 3,639 시비 8,491)
 -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 단가 (대) : 기종별 규격별 상이 (140천원 ~ 1,150천원)
- 사 업 량 : 25대 ※ 예산 범위 내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 사업내용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 처리대상 :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방치 폐농기계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처리업체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관내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3 세부 내용

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첨부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지원단가 낮은 순 우선선정
- 처리 업체 선정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처리 업체로 선정

나. 폐농기계 처리 비용 지급 단가

(단위 : 원/대)

구 분(중량)	계 F=(A+B+C)	운송비 (A)	인건비 (B)	타이어 처리비 (C)	비고
경운기(120kg)	210,000	100,000	70,000	40,000	관외 지역의 경우는 100,000원 추가
관리기(70kg)	140,000	50,000	70,000	20,000	
이앙기(100kg)	140,000	50,000	70,000	20,000	
콤바인(2톤)	650,000	250,000	300,000	100,000	
트랙터(1.5톤/소형)	750,000	250,000	300,000	200,000	
트랙터(1.7톤/중형)	900,000	250,000	400,000	250,000	
트랙터(2.0톤/대형)	1,150,000	350,000	500,000	300,000	
SS기	750,000	250,000	300,000	200,000	
기타(운반트레일러)	500,000	250,000	150,000	100,000	

* 트랙터의 경우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 기종은 규격과 관계없이 정액단가 지급

다. 폐농기계 처리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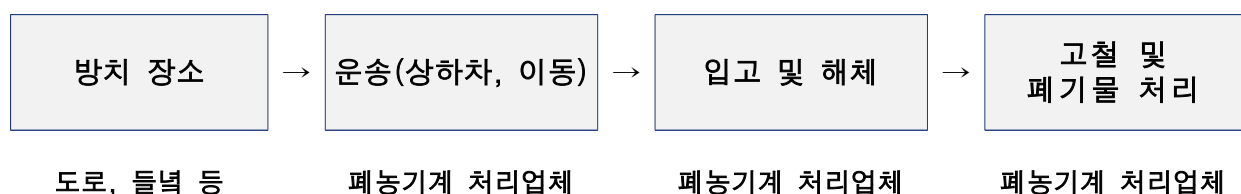
○ 협약대상

—정읍시장 ↔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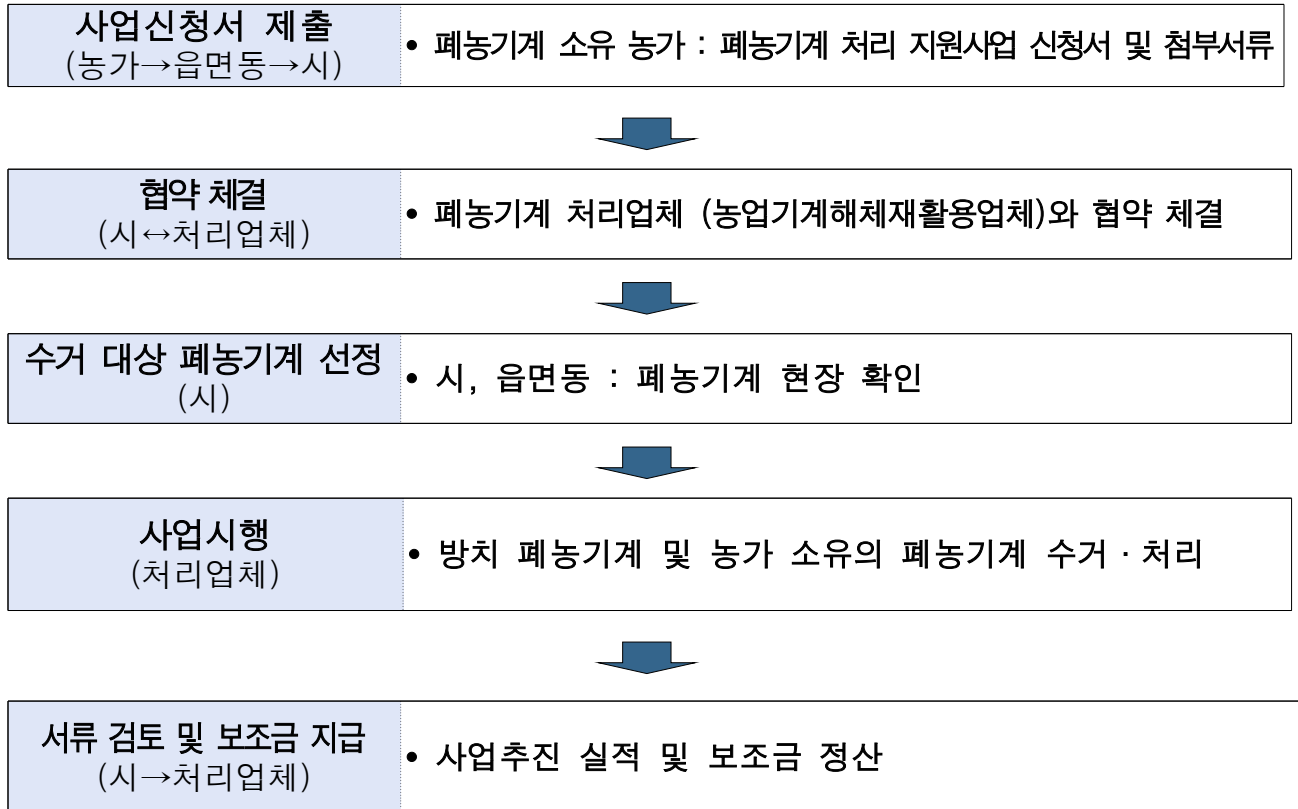
○ 협약방법

—정읍시장과 폐농기계 처리업체(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상호 합의하여 체결

○ 수거·처리과정



4 추진 절차



5 금후 계획

- 사업 추진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읍면동) '26. 8월
- 수거 폐농기계 선정 (시) '26. 8 ~ 11월
- 처리업체 선정 및 협약 (시) '26. 8월
- 폐농기계 처리 추진 (업체) '26. 8월 ~ 11월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시) '26. 12월 한

- 붙임 1. 서식 1부.
2. 사전점검표 1부 끝.